

## 결 정

2018 - 1017 신문윤리강령 위반  
광주매일신문 발행인 남 성 숙

## 주 문

광주매일신문 2017년 12월 11일자 12면 「투명경영 경쟁력 강화·차별화로 주택건설 성장 이끈다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광주매일신문은 전남 지역 건설업체인 승원종합건설(주)를 대표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장점 위주로 대대적으로 소개했다. 하단 광고를 빼고 전면을 할애한 기사에 이 회사가 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 조감도 사진 3장도 곁들였다. 이러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###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	김 용 담	김 용 담
위 원	정 승 호	정 승 호
	장 명 국	장 명 국
	이 동 현	이 동 현
장 인	철	장 인 철

강 회 김희  
김 영 모 김영모  
박 현 갑 박현갑  
박 미 경 박미경

---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